

2026 베스트 협동조합 공모전 공고

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를 맞아, 고도화 5대 분야(돌봄, 의료, 교육, 주거, 에너지·환경) 및 기타 분야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우수하게 활동하는 사례를 모집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·경제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2026 베스트 협동조합 공모전을 추진합니다.

2026.5.21.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1 공모전 개요

- (공모명) 「2026 베스트 협동조합 공모전」
- (주최/주관) 기획예산처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- (파트너사) 전국협동조합협의회, 한국협동조합협의회(수협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농협중앙회, 신협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아이쿱생협연합회), 한국협동조합학회
- (지원자격) 「협동조합기본법」상 신고 및 인가를 마친 (사회적)협동조합
- (공모내용) 돌봄·의료·교육·주거·에너지·환경 및 기타분야에서 지역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을 만들어 가는 협동조합의 우수사례

분야	주요 내용 예시
돌봄	지역 돌봄, 통합돌봄, 대상별 맞춤형돌봄 등
의료	보건의료, 건강서비스 등
교육	교육서비스, 청소년, 평생교육 등
주거	주거지원, 주거문제 해결 등
에너지·환경	시민에너지, 자원순환, 환경개선 등
기타	고용서비스, 문화 등

□ (공모기간) 공고일로부터 ~6.10.(수) 18시까지

공고	심사	선정 발표	시상식 및 전시*
공고일~6.10.	6.11.~6.19.	6.22.	7.2.(목) 코엑스 마곡

* 시상은 「2026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」에서 진행되며, 수상 협동조합 사례는 전시 예정

* 2026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: 2026.7.2.(목), 코엑스마곡 4층 르웨스트홀 A

2 접수 방법 및 내용

□ (접수 방법) 홈페이지 접수(<https://ikosea.gcontest.co.kr>)

□ (제출 서류)

NO	구분	서류 내역	비고
1	서식 자료	<서식1> 참가신청서	
2		<서식2> 평가자료 ◆ 당면 문제 및 협동조합 방식의 해결 방법 ◆ 협동조합 우수사례(내부사례, 외부협력) ◆ 주요성과	
5	추가 증빙 자료	협동조합 인가(신고) 확인서 사본	1개 파일로 제출
6		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	
7		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 등기부등본) 사본	
8		정관 사본	
9		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본	

<신청시 유의사항>

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홈페이지 제출
- 2개 이상 분야 동시에 신청 불가 (사업내용 분류에 적합한 1개소만 선택)
 - 1개 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분야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 될 경우 신청자격 무효, 선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신청서류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

3 심사 기준 및 시상 규모

□ (심사 기준)

구분	심사 내용	배점
정책 적합성	제5차 기본계획 중점 분야 및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	20
문제 해결 역량	문제 설정의 적정성, 해결 모델 명확성 등	20
공익 및 사회적가치	지역사회, 공동체, 취약계층 등 공익 및 사회적가치 기여 등	20
협동조합 정체성	협동조합 원칙 준수 등 협동조합 정체성 보유	10
혁신성과 차별성	기존 방식과 차별성, 협동조합 방식의 강점 활용 등	15
확산가능성	타 협동조합, 지역 등에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	15
총합		100

□ (시상 규모)

구분	수상내용	시상금	규모
대상	기획예산처장관상*	100만원	1개소
최우수상	전국협동조합협의회장상	70만원	1개소
	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상	70만원	1개소
우수상	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	50만원	3개소

* 기획예산처장관상의 경우 선발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

< 기획예산처장관상 선발 제외 대상 >

- ① 직위해제 또는 징계(불문·경고 포함)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
- ② 최근 2년 이내 벌금형(200만원 또는 2회)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③ 최근 2년 이내 기획예산처 장관 및 타 부처 장관급 표창을 받은 자 및 기관
- ④ 공무원(비공무원 포함)의 경우 해당 업무 1년 미만인 자
- ⑤ 기타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표창 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최근 2년 이내 정부포상(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 및 기관
-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□ (우대 혜택) 선정 조합에 베스트 협동조합 현판 제작, 조합별 우수 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집중 홍보, 진흥원 지원사업 우대 등

□ (관련 문의)

- 홈페이지 접수 및 이용 관련: 02-6953-1985
- 공모 관련: 홈페이지 Q&A 게시판, 진흥원 정책지원팀(031-697-6932)